신한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- ◈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◈ 실제 계약은 「신한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」 특약, 거치식 예금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1. 상품개요 및 특징

- 상품명: 신한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

- 상품특징: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원리금 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

2. 거래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,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약관과 비대면 채널등의 계좌상세조회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내 용		
가입대상	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이 정한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		
상품유형	정기예금		
거래방법	영업점,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		
가입금액	제한 없음		
계약기간	1 개월에서 60 개월(5 년) 이내에서 연, 월, 일로 정함		
세제혜택	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		
이자지급시기	만기일시지급식 -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 지급		
원금 및	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		
이자지급제한	제한		

	예금일(신규일 또는 재예치일)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(<u>www.shinhan.com</u>)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 적용							
기본 이자 율	유형	6개월	12개월	18개월	24개월	30개월	36개월	60개월
(2025.08.01 기준)	확정급여형(DB)	1.70	2.00	1.69	1.69	1.73	1.73	1.75
	확정기여형,개인퇴직계좌 (DC/IRP)	1.44	1.74	-	1.43	-	1.47	1.49
		1	1	T	(2025	.08.01 현지	대 만기 이지	율, 연 %)
	유형	6개월	12개월	18개월	24개월	30개월	36개월	60개월
약정 이자율	확정급여형(DB)	2.08	2.43	2.07	2.07	2.12	2.12	2.15
(2025.08.01 기준)	확정기여형,개인퇴직계좌 (DC/IRP)	1.98	2.33	-	1.97	-	2.02	2.05
	※ 상기 이율은 기준일 채널등의 계좌 상세조의			•) 실제 적	용이율은	비대면
	예금일(신규일 또는	재예치	일)에 영	업점 또는	=			
	 홈페이지(www.shin	han.cc	m)에 고	시된 계약	약기간별	중도해	지이자율	² 적용
	홈페이지(www.shinhan.com)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③ 중도해지이자율 산출 시 적용되는 기본이자율은 만기이자율과 상이 하며							
		실제 중도해지이자율은 홈페이지(www.shinhan.com)에서 조회 가능						
	※ 신한은행인터넷홈페이지 > 금융상품 > 예금/신탁 > 상품안내 > 목돈굴리기							
	> 금리안내 > 금리자세히보기							
	● 1 개월 미만 : 연 0.10%							
	● 1 개월 미년 : 전 0.10% ● 1 개월 이상 : <mark>기본이자율</mark> X (1-차감율) X 경과월수/계약월수							
중도해지	(단, 연 0.10%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 연 0.10% 적용)							
이자율	※ 차감율(2025.08.01 현재)							
(2025.08.01 기준)	경과기간 1개월이·	상 37	배월이상	6개월0	상 97	배월이상	11개월	이상
	차감율 80%		70%	30%	ı	20%	10%	6
	기본이자율×(1- <mark>차감율</mark>)×경과월수/계약월수(단, 최저 연 0.10%)							
	연 0.10%							
	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	 3 개월	<u> </u>	 5 개월	 9 개월	11	개월 [· 반기일

이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자율로 셈하여 지급

- 1) 가입자의 퇴직, 연금형태의 지급 사유
- 2)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
-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-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(보증금)을 부담하는 경우
-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
- ④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『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- ⑤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『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
- ⑥ 가입자(근로자)가 사회·자연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
- 3) 퇴직연금의 계약해지 사유

3) 41264 71191

- ①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
- ②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
- ③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- ④ 수탁자의 사임
- ⑤ 가입자 사망
- 4) 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일정률의 수수료지급 사유
- ①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
- ②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에 의한 자산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
- 5) 신한은행을 수탁자로 하는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이전 사유

특별중도해지

	● 특별 중도해지이자율				
	신규(재예치) 계약기간	특별 중도해지이자율			
	계약기간 12개월 이하 신규일(재예치일) 고시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지				
	계약기간 24개월 이하	신규일(재예치일) 고시된 이 예금의 12개월제 약정이자율			
		▶경과기간 24개월 미만			
	Ⅱ 계약기간 36개월 이하 Ⅰ	신규일(재예치일) 고시된 이 예금의 12개월제 약정이자율			
		▶경과기간 24개월 이상			
		신규일(재예치일) 고시된 이 예금의 24개월제 약정이자율			
		▶경과기간 24개월 미만			
		신규일(재예치일) 고시된 이 예금의 12개월제 약정이자율			
	 계약기간 60개월 이하	▶경과기간 24개월 이상 ~ 36개월 미만			
		신규일(재예치일) 고시된 이 예금의 24개월제 약정이자율			
		▶경과기간 36개월 이상			
	신규일(재예치일) 고시된 이 예금의 36개월제 약정이자율				
	※ 단, 『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일정률의 수수료지급 사유』에 의한 중도해지의				
	경우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약정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.				
	※ 일단위 정기예금의 경우 계약기간 및 경과기간이 월 단위로 적용됨				
	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금액				
	(원미만 절사)				
이자계산방법	신규일 만기일				
	[이자계산 산식]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일수(신규일~만기일 전일)/365				
	퇴직연금시스템을	을 통해 생성 및 전달된 전문에 의해 수탁자가			
-110-1111	해지거래를 요청함으로써 시스템으로 일괄 해지 처리				
계약해지방법	●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				
	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,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				
예금 해지시	·				
불이익	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				
	만기일 전영업일까기	지 2회 일부해지 가능, 중도해지금리 적용			
	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				
	경우에는 가입자별로 2 회까지 일부해지 가능				
일부해지	● 일부해지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				
	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(DB)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				
	②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				
	③ 퇴직연금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				
৩ 되うしゅ 구구표할 시由에게 처한 경구					

	확정급여형(DB)	확정급여형(DB)퇴직계좌에 편입된 정기예금은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예치됩니다.			
재예치	확정기여형(DC) 개인형퇴직계좌(IRP)	정기여	기여형(DC), 개인형퇴직계좌(IRP)에 편입된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1 조의 3 에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.		
	자동으로 재예치 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.				
예금자 보호여부	확정기여형(DC),개인형(IRP) 퇴직연금(보호)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 1억원 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(비보호)		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 인당 "1억원까지"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		
	예금보험공사		보호되지 않습니다.		
통장발행	이 예금은 통장발행이 불가합니다.				
거래제한	1) 공동명의 : 불가 2) 담보등록, 질권설정 및 양도 : 불가				
	●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소비자가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^(주1) 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,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				
위법계약	이내(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)에 위법계약				
해지권	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				
	○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,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기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.(단, 계약종료시 행사불가)				

●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. [주1]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: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(제 17 조 제 3 항),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(제 18조 제 2항),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(제 19조 제 1,3항),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(제 20조 제 1항), 부당권유행위의 금지(제 21 조) ⊙ 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등 ⊙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 자료열람 범위가 기재된 자료열람요구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 요구권 ● 은행은 이 자료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 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 ● 은행은 위 자료를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(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는 5년) 해당 보관기간내 열람이 가능합니다. ⊙ 은행은 법령, 제 3 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

3. 유의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 및 신한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이 금융상품을 가입(계약)하시기 전에 '금융상품설명서' 및 '약관'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- <u>이 금융상품을 가입(계약)하시는 경우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</u>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
거절할 수 있습니다.

이 금융상품은 신한은행 퇴직연금사업부에서 관리하는 상품입니다.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**영업점, 고객센터(1577-8000)** 또는 **인터넷 홈페이지(www.shinhan.com)를**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한은행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◈ 실제 계약은 「신한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」 특약, 거치식 예금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상품개요 및 특징

- 상품명 : 신한은행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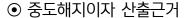
- 상품특징 :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도입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

2. 거래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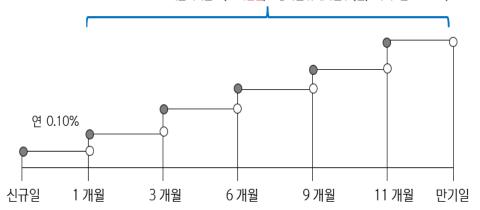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,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약관과 비대면 채널등의 계좌상세조회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내 용		
가입대상	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이 정한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		
상품유형	정기예금		
거래방법	영업점,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		
가입금액	제한 없음		
계약기간	36 개월		
세제혜택	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		
이자지급시기	만기일시지급식 -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 지급		
원금 및	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		
이자지급제한	제한		

예금일(신규일 또는 재예치일)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(www.shinhan.com)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 적용 기본 이자율 (2025.08.01 기준) 기간 금리 36개월 연 1.51% 기간 금리 약정 이자율 36개월 연 2.07% (2025.08.01 기준) ※ 상기 약정 이자율은 매월 1일 기준으로 변동되며, 실제 적용이율은 비대면 채널등의 계좌 상세조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① 예금일(신규일 또는 재예치일)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(www.shinhan.com)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 적용. - 중도해지이자율 산출 시 적용되는 기본이자율은 약정이자율과 상이하며 실제 중도해지이자율은 홈페이지(www.shinhan.com)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 ② 2025 년 06월 30일 이후 신규된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아래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. - 가입기간 33 개월 미만: 신규 또는 재예치 당시 고시된 약정이자율*80% - 가입기간 33 개월 이상: 신규 또는 재예치 당시 고시된 약정이자율*90% ※ 일반중도해지이자율 확인 경로 중도해지 신한은행인터넷홈페이지 > 금융상품 > 예금/신탁 > 상품안내 > 목돈굴리기 이자율 > 금리안내 > 금리자세히보기 ⊙ 1개월 미만 : 연 0.10% ● 1 개월 이상: 기본이자율 X (1-차감율)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연 0.10%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 연 0.10% 적용) ※ 차감율(2025.08.01 현재) 경과기간 1개월이상 3개월이상 6개월이상 | 9개월이상 | 11개월이상 차감율 80% 70% 30% 20% 10%



기본이자율×(1-<mark>차감율</mark>)×경과월수/계약월수(단, 최저 연 0.10%)



이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자율로 셈하여 지급

- 1) 가입자의 퇴직, 연금형태의 지급 사유
- 2)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
-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-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(보증금)을 부담하는 경우
-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
- ④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『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
특별<mark>중</mark>도해지

- ⑤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『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
- ⑥ 가입자(근로자)가 사회·자연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
- 3) 퇴직연금의 계약해지 사유
- ①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
- ②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
- ③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- ④ 수탁자의 사임
- ⑤ 가입자 사망

- 4) 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일정률의 수수료지급 사유
- ①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
- ②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에 의한 자산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
- 5) 신한은행을 수탁자로 하는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이전 사유
- 6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3 조의 4 및 제 13 조의 6 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취소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

● 특별 중도해지이자율

신규(재예치) 계약기간	특별 중도해지이자율			
계약기간 12개월 이하	신규일(재예치일) 고시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자율			
계약기간 24개월 이하	신규일(재예치일) 고시된 이 예금의 12개월제 약정이자율			
	▶경과기간 24개월 미만			
게이다기가 24개의 이숙	신규일(재예치일) 고시된 이 예금의 12개월제 약정이자율			
계약기간 36개월 이하	▶경과기간 24개월 이상			
	신규일(재예치일) 고시된 이 예금의 24개월제 약정이자율			
	▶경과기간 24개월 미만			
	신규일(재예치일) 고시된 이 예금의 12개월제 약정이자율			
계약기간 60개월 이하	▶경과기간 24개월 이상 ~ 36개월 미만			
기계학기선 00개별 이어	신규일(재예치일) 고시된 이 예금의 24개월제 약정이자율			
	▶경과기간 36개월 이상			
	신규일(재예치일) 고시된 이 예금의 36개월제 약정이자율			
※ 단, 『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일정률의 수수료지급 사유』 및 제 6 호				

※ 단, 『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일정률의 수수료지급 사유』및 제 6 호 『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취소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』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약정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.

※ 일단위 정기예금의 경우 계약기간 및 경과기간이 월 단위로 적용됨

이자계산방법

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금액 (원미만 절사)

신규일 만기일

[이자계산 산식]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일수(신규일~만기일 전일)/365

	⊙ 퇴직연금시스템을 통해 생성 및 전달된 전문에 의해 수탁자가				
계약해지방법	해지거래를 요청함으로써 시스템으로 일괄 해지 처리				
	⊙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				
	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,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				
예금 해지시 불이익	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				
일부해지	만기일 전영업일까지 2 회 일부해지 가능, 중도해지금리 적용 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2 회까지 일부해지 가능 ● 일부해지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(DB)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②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③ 퇴직연금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				
재예치	 ●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1 조의 3 에 의해 만기일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. ●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예치 되며, 약정이자율을 제외한계약조건은 직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재예치 됩니다. ● 자동으로 재예치 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금액으로 합니다. 				
예금자 보호여부	확정기여형(DC), 개인형(IRP) 퇴직연금(보호)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 1억원	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 인당 "1 억원까지"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			

	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(비보호) 예금보험공사 비보호	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		
통장발행	이 예금은 통장발행이 불가합니다.			
거래제한	1) 공동명의 : 불가 2) 담보등록, 질권설정 및 양도 : 불가			
위법계약 해지권	 ●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소비자가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(주))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,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(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 이내의 범위)에 위법계약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 ●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,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기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.(단, 계약종료시 행사불가) ●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. (추1)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: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(제 17 조 제 3 항), 작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(제 18 조 제 2 항),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(제 19 조 제 1,3 항),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(제 20 조 제 1 항), 부당권유행위의 			
TI TI 0471	● 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			
자료열람 오그귄		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		
요구권	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등 ⊙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 범위가 기재된 자료열람요구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			

- 은행은 이 자료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 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- 은행은 위 자료를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(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는 5년) 해당 보관기간내 열람이 가능합니다.
- 은행은 법령, 제 3 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3. 유의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 및 신한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이 금융상품을 가입(계약)하시기 전에 '금융상품설명서' 및 '약관'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- <u>이 금융상품을 가입(계약)하시는 경우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</u>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- 해당 정기예금 상품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이 금융상품은 신한은행 퇴직연금솔루션부에서 관리하는 상품입니다.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**영업점**, 고객센터(1577-80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shinhan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